

국립대학 육성사업 사업관리지침 및 사업비 집행 관련 FAQ

〈2020.7., 대학지원1팀〉

Q01. 사업비로 편성하는 내부교직원의 강사료, 원고료, 연구비 등의 경우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교연비로 편성하였으나, 국립대학회계 예산 편성·집행 지침 개정('20.6.11)에 따라 해당 절차가 삭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비로 편성하는 내부교직원 강사료, 원고료, 연구비 등은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A01. 개정된 국립대학회계 예산 편성·집행 지침에 따르면,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별도로 지원·보조받은 재원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에서 내부교직원에 대한 강사료, 원고료, 연구비 등을 편성·집행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별 지침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국립대학 육성사업 관리지침(p.9, 이하 동 사업 관리지침)을 개정하여 내부교직원 강사료, 원고료, 연구비 등 편성 시 교육부 장관의 승인 절차를 삭제하고, 국립대학회계 예산 편성·집행 지침 상 해당 목(운영수당, 연구용역비 등)으로 편성·집행 가능한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만, 대학은 사업목적 부합성 및 사업비 관리 책무성을 고려하여 특정항목으로 예산이 편중되지 않도록 편성해야 합니다. 사업목적 및 성과관리와 연계하여 예산이 과도하게 편중되어 편성된 경우, 사업계획 컨설팅 등을 통해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02. 사업비로 소속대학 교원에게 정규강의에 대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까?

A02. 기존 정규교육과정 강의에 대한 강사료는 지급 불가합니다. 단, 사업계획과 연계하여 특강 또는 비정규 과정을 개설하거나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신규 교재개발 등에 대하여 내부교직원에게도 강사료 또는 원고료 등의 지급이 가능하며, 국립대학회계 예산 편성·집행 지침의 '운영수당' 목으로 편성 가능합니다.

Q03. 국립대학회계 예산 편성·집행 지침의 운영수당으로 편성하여 소속대학 교직원에게 강사료 또는 원고료 등의 수당을 지급하고자 할 때, 지급 단가는 어떤 기준으로 적용해야 합니까?

A03. 강사료 및 원고료는 국립대학회계 예산 편성지침 내 '7강사료(p.63~66)' 기준을, 자문료 및 심사료는 편성지침 내 '6위원회 참석수당 등(p.62)' 기준 내에서 사업추진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대학 자체기준(지침)을 마련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Q04. 국립대학회계 예산 편성지침의 '위원회 참석수당 등(p.62)' 기준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이 일일 100,000원으로 정해져 있으나, 대학 자체기준으로 일일 150,000원으로 상향하여 기준을 마련해도 되는지요?

A04. 국립대학회계 예산 편성지침 내에서 대학 자체기준(지침) 마련을 하여야 하므로, 회계지침보다 상향된 기준 마련은 불가능합니다.

Q05. 기초보호학문 분야 육성과 관련하여 신규채용된 교원의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비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립대학회계 예산 편성지침에는 내부교직원의 경우, 연구용역비 지원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을 위해 지급하는 경우에도 불가능한 것인가요?

A05. 개정된 국립대학회계 예산 편성·집행 지침에 따르면,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별도로 지원·보조받은 재원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이하 재정지원사업)에서 내부교직원에 대한 연구비를 편성·집행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별 지침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동 사업관리지침에 따라 사업계획과 연계한 내부교원 연구비 지급이 가능하며, 국립대학회계 예산 편성지침의 '연구용역비' 목으로 편성 가능합니다. 단, 연구용역비에 대한 세부 운영·관리 등에 대한 사항은 국립대학회계 예산 집행지침 내 세부기준(p.83~84)을 준용하시기 바랍니다.

Q06. 교원 개인연구비의 경우 사업비로 지원이 가능합니까?

A06. 사업 취지*와 부합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에 포함된 연구비 지원이라면 가능합니다. 사업과 무관한 개인연구비 지원은 불가합니다.

* 기초보호학문 및 특화 분야 육성, 지역발전 기여를 위한 지역학 연구, 네트워크 구축에 따른 공동 연구 등 '국립대학 육성사업 계획서'에 포함된 연구에 한함

Q07. 국립대학 회계 집행지침 '운영수당'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 자기가 소속된 대학의 사무와 관련하여 원고를 작성하거나 조력하는 경우 원고료 또는 사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경우에도 이의 적용을 받는 것이지요?

A07. 개정된 국립대학회계 예산 편성·집행지침에 따르면, '특정목적 달성을 위해 별도로 지원·보조 받은 재원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별 지침에 따르도록' 예외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바, 국립대학육성사업은 동 사업관리 지침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내부 교직원이 사업계획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한 경우 강사료 또는 원고료를 '운영수당' 목적으로 편성하여 집행 가능합니다.

Q08. 국립대학회계 예산 집행지침의 '운영수당' 집행방법에는 '6)교육훈련 등에 따른 강사료'의 지급단가 및 기준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립대학육성사업에서 내부교직원 강사료 지급 시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까?

A08. 개정된 국립대학회계 예산 집행지침에 따르면 운영수당 집행 시 특정목적 달성을 위해 별도로 지원·보조 받은 재원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별 지침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사업관리지침으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관리지침(p.9) : 강사료, 원고료는 국립대학회계 예산 편성지침 내 '강사료(p.63~66)' 기준을, 자문료 및 심사료는 편성지침 내 '위원회 참석수당 등(p.62)' 기준 내에서 대학 자체기준(지침) 등을 마련하여 집행

Q09. 국립대학육성사업 관리 지침에 따르면 7개의 '세부내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각 세부내역별로 한도가 정해져 있는지요?

* ①인건비, ②프로그램 개발·운영비, ③네트워크활성화 지원·운영비, ④강의실 및 실험·실습실 환경 개선비, ⑤교육·연구력 증진 및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⑥장학금, ⑦기타사업운영비

A09. 동 사업은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세부내역별 한도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대학의 연도별 총 예산 범위내에서 각 세부내역별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는 있으나, 사업목적 부합성 및 사업비 관리 책무성을 고려하여 특정항목으로 예산이 편중되지 않도록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Q10. 국립대학육성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사업비로 코스 분담금 및 전자저널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비율 제한이 정해져 있는지요?

A10. 사업추진 상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면, 해당 항목에 대한 예산 편성·집행은 가능하며, 별도의 비율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목적 및 성과관리와 연계하여 해당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된 경우, 사업계획 컨설팅을 통해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11. 사업비 교부 전 대학자체 계획에 따라 자체 재원으로 선집행이 가능한데, 이 때 반드시 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A11. 매년도 사업비 집행은 사업계획 수립을 근거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업연속성을 고려하여 '20년 사업비 교부 또는 확정 전에 전년도에 이어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를 근거로 집행할 수 있으며, 사업비 교부 전에 대학 자체회계로 선집행한 금액은 사업비 교부 후 대체가능합니다.

Q12. 사고이월금의 경우에도 집행액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지요?

A12. '19년 사업비의 경우, 사업기간 중 원인행위를 한 사업비(사고이월 등)의 경우 집행액으로 보았으나, 국립대학회계 상 '사고이월'은 이월액으로 별도 관리되므로 대학 회계와 사업비 기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년 사업비부터는 아래와 같이 집행액으로 인정될 예정입니다.

- (해당년도 사업비 집행인정) 지출원인행위 및 그에 따른 거래행위가 해당 사업년도에 발생하고, 사업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출납폐쇄기한)에 지출행위가 수반되었을 경우 한해 당해 사업연도에 지출된 것으로 인정(이월승인 불필요)
- 단, 사업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출납폐쇄기한) 지출 불가한 사항의 경우, 이월액으로 포함하여 재단에 사전승인을 득한 후, 차기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 가능
- ※ 총 사업비의 10% 이내

Q13. 국립대학육성사업 관리지침에 따르면 예산변경 시 국립대학 회계지침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까?

A13. 사업계획의 수정이 없는 예산의 변경(이·전용 등)만 발생한 경우에는 국립대학 회계 예산 편성·집행 지침의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Q14. 타 재정지원사업과의 예산 중복집행 방지와 관련하여 다른 재정지원사업의 프로그램을 해당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 대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A14. 재정지원사업별로 특수한 목적이 있으므로, 그에 부합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타 사업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과 동일한 프로그램을 참여(수혜) 대상만 다르게 하여 국립대학 육성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중복집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으로 기획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Q15. 사업 프로그램 운영 시, 재학생을 보조요원으로 단기 활용(일용직 등)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관리지침 세부내역의 어느 항목으로 구분하여야 하나요?

A15.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단기 인력 활용은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또는 장학금(근로장학금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으로 구분 가능합니다.

Q16. 네트워크 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협력대학 교수에게 우리대학 사업비로 재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A16. 대학 간 네트워크 활성화와 관련한 공동연구 사업이라면 가능합니다. 단, 협력대학과 사업비 공동부담에 대한 배분 및 지원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종료 후 정산 절차 등을 투명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17. 사업 추진에 따라 시상금(품) 또는 상품권(문화상품권, 기프티콘 등), 기념품 제공 등이 가능한지요?

A17. 일반적인 대학 홍보 또는 단순히 프로그램 참여독려 등을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기념품 제작은 불가능하나, 사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참여자 대상으로 배포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단, 시상금(품) 또는 기념품 모두 청탁금지법을 준수하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서 대학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집행하시기 바라며, 관리대장을 구비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Q18. 위 질문과 연계하여 사업비의 직접수혜 대상은 재학생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시상금(품) 또는 기념품의 경우에도 재학생 대상으로만 지급가능한가요?

A19. 시상금(품) 또는 기념품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추진 상 필요한 운영비의 일부로 볼 수 있으므로 지급 대상을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내·외부인 모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비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리대장을 구비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Q20. 사업 추진 시 교육프로그램 등에 활용하기 위해 도서(교재 등)를 구매하여 참여자들에게 배포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구매한 도서에 대하여 중앙관리(배포 후 회수) 하여야 하는지요?

A20. 도서관 등의 자본 형성을 위한 자산취득비에 포함되는 도서구입의 경우에는 중앙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재 구매의 경우는 자산취득 목적이 아닌 프로그램 운영비로 볼수 있으므로 중앙관리 대상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Q21. 장학금 관련 프로그램 운영 시, 재학생 신분으로 참여하였으나 장학금이 지급되는 시기에 군입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휴학한 학생의 경우 장학금 지급이 가능합니까?

A21. 대학의 장학금 수혜요건을 충족하나, 질의내용과 같은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적용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Q22. 후학습자 전담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해당 전담과정(학과) 운영을 위한 교직원 인건비 및 학위과정 강의료, 학과 운영비 등 집행이 가능한가요?

A22. 후학습자 전담과정의 경우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세부사업에 포함하여 운영계획을 작성하는 것이므로, 동 과정 운영에 따른 사업비 집행은 기본적으로 국립대학육성사업 관리 지침 범위내에서 가능합니다.

인건비의 경우 전담과정 운영을 위해 신규 채용된 인력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합니다. 학위과정(정규과정)에 대한 강의료는 불가하나, 사업과 연계된 특강 또는 비정규과정 강의료 등은 집행 가능합니다. 학과 운영비의 경우, 일상적 경상경비의 집행은 불가하고, 사업과 연계성이 있는 일반수용비 등 (관리지침 기타사업운영비 정의 참고)은 집행 가능합니다.

Q23.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원격 강의 강사료와 관련하여, 콘텐츠 제작비 지급이 가능한지요? 더불어 동일한 강의 영상을 다회 송출할 경우, 강사료의 추가 지급이 가능한지요?

A23. 원격 강의를 위해 콘텐츠를 개발하는 경우, 콘텐츠 제작에 따른 개발비 지원은 가능하나, 동일한 강의 영상의 단순 반복 송출 횟수에 따라 동일하게 강의료를 지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다만, 녹화 방식이 아닌 실시간 원격 강의의 경우에는 오프라인 강의에 준하여 강사료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이 가능합니다.